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제출일자: 2006.1.11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5. 6.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 시행(법률제7246호)됨에 따라 도의 옥외광고물관련사무가 모두 시로 이양되어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젂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안 제5조)
- 나.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규정 (안 제6조)
- 다.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안 제7조)
- 라. 광고물별 표시방법 (안 제8조 내지 18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5. 11. 8 .~ 12. 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첨부하여야 한다.

-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 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 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 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 5. 선전탑
-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7.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천 시(이하 "시"라 한다)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 2. 옥상간판중 가로와 세로가 각각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 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 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 2. 지상 변압기함
-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 5. 교통안전시설물
- 6. 낙석방지시설물
-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동지역은 4층, 읍.면지역은 3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

는 지면으로부터 7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7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8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가능하다.

-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휴지통, 벤치
- 2. 그 밖에 공공시설물중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 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 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 어야 한다.
-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

- 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 이용·지정게시대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 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형광천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 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

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 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용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 ④지주 설치 및 이용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 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 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

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 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 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 라. 이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 2. 전단의 크기는 30센티미터 곱하기 40센티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입법예고, 일반 공익 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워
-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 가
-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 록 규정한 사항
 -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 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기타 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중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사무실
 -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 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 3. 위반 장소·위치
 -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다.
-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 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 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 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 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

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 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사천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 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 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 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 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 하여는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육대상	비고
신규 교육	6시간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 고업에 종사하 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 도 교육실시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 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 후 최초로 실 시하는 교육 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이 이 과 그 이 과	
보수교육	3시간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도로 법」등) 	※ 필요시 종업원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점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7 범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15,000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77		T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 수 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2= 2 2 2 2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3,000
		·1제곱미터 초과시	1,000
		1제곱미터당 가산	
나. 전주·가로등주	개	· 10개 이하	4,000
		·10개 초과시	2,000
		5개당 가산	·
9. 교통시설(지하도)	יו	· 5제곱미터 이하	9,000
이용 광고물	개	·5제곱미터 초과	10,000
10. 교통수단이용			,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다. 비행기·선박	대		10,000
양측면	,,		
나. 차량 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3,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000
		1제곱미터당 가산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7,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500
		1제곱미터당 가산	,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미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개	해당 종류의	
이용하는 경우		광고물 수수료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2배를 적용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u>2</u> . 공중전화부스이용 광 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u>4</u> . 벽면이용광고	개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 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T] · ゼ/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21,000 38,000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4,000 20,000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14,000 20,000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4,000 20,000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 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 루		
_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11,000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l.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런 법 규	비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과 태 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 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8만원 13만원 19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25만원 30만원 39만원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29만원
- 2.0~ 2.3제곱미터 이하 - 2.4~ 2.6제곱미터 이하 - 2.7~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 을 가산한 금액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 5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과 태 료
나. 현수막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 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3만원 15만원 19만원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 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 1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 3.0 [~] 3.7제곱미터 이하 - 3.8 [~] 4.4제곱미터 이하 - 4.5 [~] 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3만원 15만원 19만원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		25만원 35만원 45만원
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 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과 태 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2만원 15만원 18만원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 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 10만원
(4)(1)내지(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 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라. 전단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 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이 행 강 제 금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 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5만원 55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미만		55 년 년 65 만원 75 만원 85 만원 95 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년년 110만원 130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 하 - 16.1~18.0제곱미터 이 하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아 - 18.1~20.0제곱미터 미 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0년년 +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9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 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이 행 강 제 금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 하 - 12.1~14.0제곱미터 이 하 - 14.1~16.0제곱미터 이 하 - 16.1~18.0제곱미터 이 하 - 18.1~20.0제곱미터 미 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 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 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110년년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 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 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 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이 행 강 제 금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 하 - 12.1~14.0제곱미터 이 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 하 - 16.1~18.0제곱미터 이 하 - 18.1~20.0제곱미터 미 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 하 - 21.1~30.0제곱미터 이 하 - 30.1~35.0제곱미터 이 하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 35.1 40.0제곱미터 이 하 - 40.1~45.0제곱미터 이 하 - 45.1~50.0제곱미터 미 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300만원 +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 हो-	- 31 -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이 행 강 제 금
- 연면적 11 [~] 15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70만원+ 1㎡당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40만원 50만원
이하 - 연면적 11 [~] 15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연면적 16 [~] 2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80만원+ 1㎡당5만원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 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 안내도	' ' ' ' ' = - '	
_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 함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 공시설물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위 반 사 항	부 과 범 위	이 행 강 제 금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 하		25만원 30만원
이 - 연면적 11 [~] 15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36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 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1)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9만원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45만원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 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 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 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사천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18)	(19)			
① 번	② 전	(3) 시는 미그 나이로는 퍼그 어	<u>4</u>) সূদ্র	⑤ 전	(6) XT	() 에 의 하고 되고 되는	ু জম	94	(10) T	⑪ 丑	① 丑	① ③ 항	① 3 간	①5 성	16 7	① 전	(18) 世 경	① 日
		건비이	소	화		고				시	시	고	공			화	사	
		는 번 호	<u>エ</u>	번		신				위	기	내	일			번	항	고
호	명	오	명	호	소	고 번 호	류	량	격	치	간	용	자	명	소	호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옥	외 광 .	고 물 등	안 전 도	트 검 /	나 서	
신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호		
청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인	⑤ 주	· 소			⑥ 검 사 ·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 일	고물등	허가 번호			8 광고물 종	등의류		
9 표· 장	시위치	또는 소			⑩ 광고물 규	등 의 격		
① 신	청 일	! 자			① 검사 '	일 자		
검 내		사 용						
검의		사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ΓŞ	옥외광고	1물 등 관	리법 시행령	형」 제39조 및	Ų 「사천시 옥	·외광고둘	· 등 관리 조례」 제22	
조지	세1항의	규정에 :	의하여 안전	도검사를 위외	- 같이 실시하	였음을 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시	가	소속 :		Ž	직위(직명) :			
		성명 :		(1)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뒷 면>

			、火 セイ
검	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 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사 -	용 자 재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al a H H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기초부분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 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 합 부 위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1787[1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 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 🧷	기설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 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 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 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해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0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상황	변, 인위적 변동 후의 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1	2		신청지	<u>-</u>	6	7	8	9	10	11)	12		검사지	-	16
신	신	3	4	5	광고	광고물	표시	광고물	검	검	검	13	14)	15)	비
청	청		업		물등	등의	위치	등	사	사	사				
번	일	성	소	주	허가	종류	또는	의	일	구	결	소	직	성	
호	자		명		일자		장소	규격	자	분	과				
		명		소	(허가							속	명	명	고
					번호)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제	ठू				처리기간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역	위탁지정신청서		30일					
신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청자	③ 업소명 (단체명)									
^	④ 주 소									
([
	. ,	시행령」 제40조 및 「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시			제26조제3항					
		년	일 일							
		신 청	! 인	0						
		귀하								
					수 수 료					
구비	구비서류: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 사천시 저한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료 징수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제	<u>ŏ</u>	옥외	비광고들	ᄛᆕᅂ	안전 도	근	ქ사업무	위탁지	정서	
수	① 성	円の					② 주민등	등록번호		
탁	③ 업소 (단체	-								
자	④ 주	소								
5	⑤ 영업장 소재지									
6	위 탁 기	간		20			~ 20		. (년 월)	
	우외광고물 3조제4항의			_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낙합니다.	
					년		얼	일		
				사	천	시	장	<u>୍</u>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사 천 시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 물 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 년 월 일 사 천 시 장 **①**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1	2	3	4	5	6	7	8	9
일 련	광고물	표 시	수 량	보 관	보 관	위 반	담 당	비고
번 호	종 류	내용		연월일	장 소	장소·위치	(취급)자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 구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인	③주 소												
④광.	고물등 종류		5수 량										
6광	고 내용												
위의	의 광고물등을 청구	- - 합니다. 년 월 청구인		= 인)									
시	·천시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	ਹਿਮ ਸ		②주민등록번호										
수	①성 명												
수인	①정 명 ③주 소												
인			⑤수 량										
인 ④광.	③주 소		⑤수 량										
인 ④광 ² ⑥광 위 ⁹	③주 소 고물등 종류	-합니다. 년 월 인수인		= 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0호서식】

제	<u>ই</u>		처리기간
	<u> </u>	윾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 서	3 일
신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③ 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자	⑤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	교부 신청 사유		
	사천시 옥외광. 증재교부를 신 ²	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전 청합니다.	같이 옥외광고업 신
		년 월 일	
		신청인 ①	
	사천시장 귀	ठो	
			수수료
구비	서류 : 없음	사천시 징수조리	제증명 등 수수료 계 참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1호서식】

제	<u>ŏ</u>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1) J	고육 과정명	
② ī	교육수료일자	
수 강	③ 성 명	
· 경 자	④ 소 속 업소명	
제32		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
		년 월 일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인

사 천 시 장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2	3	4		6	
① 연번	교 육	교 육	소 속	⑤성 명	주민등록	비고
	과정명	수료일자	업소명		번 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13호서식】

			옥외	광고	업종	사지	·교육	불참선	ᆚ고ᄷ	1			
	①성	円の					②주민	등록번호	5_				
고자	③업 소	. 명					④영업	장소재지]				
	5주	소											
교 육	⑥일	시											
계 획	⑦장	소											
⑧ 불	불 참 사	Ô											
	사천시 ⁴ 자 교육에		_	•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	강고업
							년	월	일				
					신청	인			0				
,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	서류 : 불	참사유를	를 증빙학	<u></u> 할수 9	있는 관	계서류	 루 사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4호서식】

제	ই				처리기간
	옥외광	고업종사자교육위	탁지정신청서		30 일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자	③업 소 명 (단체명)				
<i>사</i>	<u> </u> 4주 소				
⑤영	업장 소재지		⑥전 화 번 호		
	, , -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가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기	. , , , , -	<u>:</u> 등 관리	조례」 제33조
		년	월 일		
		신 청 인	1		
	사천시장 귀히	ŏÌ			
	구비서류				수 수 료
2	2. 강사확보에 관	관한 서류 1 부. 한 서류 1 부. 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사천시 징수조려	제증명등 수수료 참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5호서식】

제	<u>ŏ</u>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업장소재지		
⑥위 탁 기 간 20 ~ 20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⑪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관 런 법 령 발 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第3條 (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에 廣告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 및 文化財保護區域
 -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 4.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 5. 道路·鐵道·空港·港灣·軌道·索道·河川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부근 의 地域
 - 6. 기타 美觀風致의 유지 및 都市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設置 의 방법 및 期間등 許可 또는 申告의 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第9條 (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查)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設置하거나 管理하는 者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查의 業務를 제11조의3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廣告事業協會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度檢查業務를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度檢查業務를 委託받은 者(그의 任員 및 職員을 포함한다)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第10條 (위반에 대한 措置)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條 내지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查에 合格하지 못한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그 廣告物등을 管理하는 者, 廣告主, 屋外廣告業者, 그 廣告物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美觀風致·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戒告하여야 한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에 소요된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條例로 정하며, 그 徵收節次에 관한 行政代執行法 第6條第1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國稅 徵收法의 例"를 "地方稅滯納處分의 例"로 본다.
-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第12條 (廣告物등에 관한 敎育)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屋外廣告業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廣告物등의 표시·

設置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屋外廣告業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의 실시를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施設基準·資格 기타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7條 (手數料) 다음의 경우에는 그 許可 申請時·신고시·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 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查
 -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록 [시행일:2006.6.24] 제17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 1.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 는 공연간판
 -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 3. 옥상간판
 -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5. 애드벌룬
 -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 9. 선전탑
 - 10. 아취광고물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등) ① (생략)

- 1 ~ 2 (생략)
-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제곱미터미만인 간판
-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 8 (생략)
-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아니할 수 있다.
 -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 서
 -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서류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 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 로 본다.

- 제8조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의할 것
-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 2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나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 4.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4의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 5.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8.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 9.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1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1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 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 2. 가로수
 - 3. 동상 및 기념비
 -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6. 전망대 및 전망탑

- 7. 담장
- 8. 재배중인 농작물
-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 례로 정하는 물건
-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 ②광고물등은 상품·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③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④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한다.
 - ⑧삭제 <1999.2.26>

- ⑨삭제 <2001.11.22>
- ⑩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 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 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5.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그 지역이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지역을 제외한다.
-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 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 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②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해당 자치구의 조례가정하는 층,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2.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점멸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4.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③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
 - 1.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곱미터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 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 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
- ⑤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정에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간판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게시시설 또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제10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하되,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3.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20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제2호 내지제6호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표시할 수 있다.
 - 1.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군·구조 데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 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6.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②당해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 2.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 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3.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되,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도시지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 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 6.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7.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로교통안전·주변미관 및 표시하고자 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에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 이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후 3월이내에 영업내용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당해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 미터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 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 6.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의 전체표시면적의 2분의 1이 내이어야 한다.
 - ②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군지역을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다.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으로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4.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모형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 ③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1. 전주 및 가로등주
 -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 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 익시설물
 - ②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 ③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 1.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 5.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0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창문이용 광고물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0조의2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중 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 분은 피복처리하여야 한다.
 -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②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적색류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 2의2.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 다.
 - 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 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

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삭제 <2001.11.22>
- 6.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 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제3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 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32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 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을 제외한다)
 -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

- 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2. 시·군·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 도록 규정한 사항
 -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8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 제40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자로 한다.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 제41조의2 (광고사업협회의 정관) ①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5.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사업에 관한 사항
 - 8. 회비에 관한 사항
 -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협회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2.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 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그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3조 (교육의 위탁)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 13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⑥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 제4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 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부과대

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